## 한의과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규정

제정 2016.08.30. 1차 개정 2018.11.23.

제1조(명칭) 위원회는 한의과대학교육과정혁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적 지식과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의학 교과목 및 프로그램의 개발,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, 운영 및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증진, 교양교육의 내실화 추진, 졸업생의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11.23)

**제3조(소재)**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내에 둔다. (개정 2018.11.23)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8.11.23)

- 1.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
- 2. 한의학 교과목 표준교육안 및 평가방법 개발
- 3. 한의학 교과목 교재 개발
- 4. 한의학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예과학과장 및 학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임교원, 산업체인사 및 학생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8.11.23)
  - ②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<mark>위원회 업무를</mark> 총괄한다. (개정 2018.11.23)
  - ③ <mark>위원회는</mark>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11.23)
- **제6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단,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8.11.23)
- 제7조(연구원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- 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9조(예산지원)** 위원회는 소정의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1.23)
- **제10조(운영세칙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 (기획예산부-671, 2016.08.30)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**부 칙** (기획예산팀-581, 2018.11.23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